

##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2 조례 제2357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안양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 가. 시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 나.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 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관리
  - 라.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 운영
  - 가.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인터넷방송국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은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홍보매체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시민기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상) ①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시민 및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이벤트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2.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공식 이벤트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8]

제8조(광고의 게재) ①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징수요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3. 1. 8>

상품 등 제공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제공대상자 결정 방식	1명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비 고
이 벤 트	참여자 중 추첨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비 고

1. 이벤트는 홍보내용에 따라 댓글 달기, 퀴즈, 사진·동영상 게시 등을 말한다.
2. 제공대상자 결정방식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말한다.
3.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이벤트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제공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4.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이벤트에서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